

의안번호	2210859
의 퇴 인	서미화의원
회 답 일	2025. 7. 4.
추계번호	25C319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를 30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500만원(연평균 1,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확대 (안 제83조의4제4항·제5항)	19	19	19	19	19	95	19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 평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3조의4 제4항·제5항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확대)	○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의약품 관련 학회,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포함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3조의4제4항·제5항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확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현행 11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는 총 11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고 10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10인이 위원으로 구성됨
 - 10개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 개정안에서 위원 수를 30인 이하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존 협의회에 추가로 19인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수당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을 고려하여 (대면)회의시 25만원을 지급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97호)에 따르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확대 (안 제83조의4 제4항·제5항)	19	19	19	19	19	95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박선아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741	sunapark@assembly.go.kr